

【 5 】 양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6. 10. 29.

제출자 : 양 주 군 수

□ 제안이유

- 지역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양주군과 의료보험 조합간의 업무추진 체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골자

- 군수 및 읍·면장은 의료보험조합지소의 설치, 보험료 산정을 위한 지방세 과세 자료, 피보험자의 신상이동 현황 제공 등을 지원토록 함. (안제2조)
- 군수는 읍·면 지역의료보헤파원협의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규칙을 제정 운영토록 함. (안제3조)
- 읍·면장은 지소 근무자가 의료보험 업무를 위한 각종 대장을 열람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토록 함. (안제4조)
- 지소 직원은 의료보험 업무 수행중 지득한 비밀에 대해서 누설하지 않도록 함. (안제5조)
- 읍·면장은 지소 직원의 복무 상황을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상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 (안제6조)

양주군 조례 제 호

양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군 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군·읍·면 및 리·반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사항) ① 군수 및 읍·면장(읍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읍·면사무소에 의료보험조합지소(이하 “지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설 지원
 2. 보험료 산정을 위한 주민의 소득·재산에 관한 지방세 과세자료 등의 협조
 3. 의료보험 피보험자의 자격취득, 상실업무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의 전입 신고시 관련 공부의 이송 요청 협조
 4. 의료보호대상자의 변경, 군입대 및 전역, 출생, 사망 시설등의 수용 및 퇴소 현황 협조
- ② 리·반장은 피 보험자의 보험료 고지서가 반송된 경우 소재 파악과 자격확인 업무에 협조한다.
- ③ 군수 및 읍·면장은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지방세 과세자료가 보험료 산정 자료로 부적합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소득금액 또는 재산가액의 산정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운영규정 제정등) ① 군수는 읍·면 지역의료보험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구성, 기능 및 임무에 관한 사항
2. 협의회의 소집, 의결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의결사항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협의회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읍·면장은 의료보험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회 운영상황을 수시로 확인 하는등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공부열람등) 읍·면장은 지소 근무자가 의료보험 업무를 위해 주민등록표, 과세대장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 한다.

제5조(비밀의 유지) 지소 직원은 의료보험 업무 수행중 지득한 비밀을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절대로 누설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복무관리) 읍·면장은 지소 직원의 복무 상황을 의료보험 조합 대표이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